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2023. 1. 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간접비로 지급한다.

제3조 (지급시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 1회 우수한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직전 회계연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우수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단, 평가 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등급 및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A등급(평가점수 상위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나. B등급(평가점수 상위70% 초과 9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9%

다. C등급(평가점수 상위 90% 초과):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8%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서식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능률성과급 참여연구원 평가표 제출시 해당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이 존재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평가점수는 100점 미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작일(연차과제인 경우 해당 연차 시작일)이 2023. 2.28. 이전인 경우 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최대 10%까지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한다.

④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사전제안경비,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비율만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

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간 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급 제한 및 회수)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징계 등으로 우리 대학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5.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제한된 경우
6.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총장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지침의 변경) ① 본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작일(연차과제인 경우 해당 연차 시작일)이 2023. 3. 1. 이후인 연구개발과제에 적용 시행한다.

<서식 1>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

과 제 번 호		전 문 기 관		지 원 기 관		관 리 그 룹	
연 구 책 임 자		대 학		학 과		사 업 명	
과 제 명							
당해연구기간	~ (년차)			총 연 구 기 간	~ (총 개월)		
당 해 사 업 비	원 (현금)			과 제 구 분		과제담당자	/
과 제 계 좌				최 종 연 구 종 료 일	20 . . .		

평 가 점 수

참여구분	사번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참여기간	평가점수(점)
					~	
					~	
					~	
					~	
					~	
					~	
					~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함
※ 개인별 평가점수는 0 이상 자연수(0, 1, 2, 3 …)로 작성하여야 함(소수점 작성 불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평가점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이면 연구책임자 평가점수는 100점 미만이 되어야 함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를 제출하며,
상기 평가점수에 관한 결과는 연구책임자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연구책임자: O O O (인)